민간투자사업 추진상 쟁점 해결

–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 –

용산법률

권경현 변호사

khk@jinwoonlaw.com

Ⅰ. 민간투자사업 추진상 쟁점 해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1.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1)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제5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3. 31.>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된 주요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1의2.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대상시설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8조의2에 따른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제13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6. 제21조제5항에 따른 부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7. 제47조제1항 후단에 따른 공익을 위한 처분에 관한 사항
8. 제50조에 따른 대상사업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9. 제51조의2제3항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종합평가
10.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1.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2)-1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안건 유형

● 2023.7월 제3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 안건 :

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

② 서울-양주 고속도로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안)

③ 부산항 신항 수리조선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안)

④ 국방광대역통합망 임대형 민간투자시설사업(BTL) 실시협약 변경(안)

⑤ 천안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 적정성 심의(안)

1.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2)-2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안건 유형

● 2023.9월 제4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 안건(총7개) : 보고안건 1개, 의결안건 7개

(보 고) 민간투자사업 제도개선안

(의 결) ① '23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

② 이수-과천 복합터널 민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

③ 서울시 대관람차 조성 민자사업 대상시설 적정성 심의(안)

④ 구미시 광역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민간투자 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안)

⑤ 의정부시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안)

⑥ 대전시 환경에너지종합타운 실시협약 변경(안)

⑦ 소사~원시 복선전철 임대형 민간투자시설사업(BTL) 실시협약 변경(안)

1.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2)-3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안건 유형

- 2023.12월 제6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 안건(총4건)

① 남양주 자원순환시설 민간투자 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안)

② 청주시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민자사업 대상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안)

③ 평택시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안)

④ 국가폐수공공처리시설 개량 실시협약 변경(안)

1.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2)-4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안건 유형

● 2024. 2월 제1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 안건 : (의결) 수도권광역급행철도-B노선 실시협약(안)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노선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을 심의・의결

➢본 사업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 경기도 남양주시 구간에 광역급행철도를 건설**하는 총사업비 4조 2,894억원의 **민간투자사업(BTO)**

➢사업시행자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비노선주식회사'가 지정되었으며, **'24년 상반기 착공 후 '30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

1.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2)-5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안건 유형

- 2024. 5월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 안건 :

➢ 「**대장-홍대선 실시협약(안)**」을 심의·의결 : **부천시 대장신도시 ~ 마포구 홍대입구역 구간**에 **광역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서울 서남부 지역**의 **교통난**이 **해소**되어 **대장신도시 입주민**들의 **수도권 출퇴근 시간**을 약 50분에서 **25분** 수준으로 **50%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최초의 혼합형**(BTO+BTL)* **민간투자사업**으로, **2025년 착공**하여 **2031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

➢ 「**춘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현대화 실시협약(안)**」을 심의·의결 : **노후화된 하수처리시설을 확장 이전·지하화**하고 **지상부에 공원·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5년 착공**하여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 (주간사 태영건설 워크아웃 이후 첫 사업시행자 지정 안건)

1.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2)-6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안건 유형

- 2024. 5월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 안건 :

➢ 「광명-서울 고속도로 실시협약 변경(안)」을 심의·의결

✓ 일부 구간 지하 통과 등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비, 건설기간 등을 조정한 사례 (사업비만이 아니라 건설기간까지 변경된 사례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쟁점 역시 변경협상을 통해 반영,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검토를 통해 협상안 도출,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총사업비 20% 이내 증액, 공사기간 변경의 협약 변경)

✓ 2027년 개통 시, 광명시에서 서울 방화동까지 소요시간을 22분 단축하고, 수도권 서남부 교통혼잡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

1.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3)-1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안건 유형

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

- 본 사업은 경기도 양주시 덕정동~수원시 구간에 광역급행철도를 건설하는 민간투자사업(BTO)으로
- 사업시행자로는 '(가칭)수도권광역급행철도씨노선 주식회사'가 지정되었으며, '23년 착공 후 '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

② 서울-양주 고속도로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안)

- 본 사업은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양주시 장흥면~ 양주시 은현면 용암리/하패리를 4차로 고속도로로 새롭게 연결하는 민간투자사업(BTO-a)
- 국토부는 '23년 10월까지 제3자 제안공고(90일)후 제안서 평가 등을 거쳐 '23년 12월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하고, '25년 하반기에 착공 예정

1.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3)-2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안건 유형

□「이수-과천 복합터널 민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 심의·의결

○ 본 사업은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서울시 동작구 동작동을 연결하는 도로터널과 빗물배수터널을 건설하는 민간투자사업(BTO)으로,

–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도로와 빗물(저류)배수터널을 함께 짓는 형태로, 과천시 관문사거리에서 동작구 이수역사거리까지의 주행시간이 40분에서 20분대까지 단축되어 출퇴근 지·정체가 개선될 뿐 아니라, 상습 침수지역인 사당·이수 저지대 일대의 수해 발생 문제도 해소할 것으로

– 사업시행자로는 '이수과천복합터널 주식회사'가 지정되었으며, '25년 착공 후 '3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

* 제3자 공고 이후 협상 단계 주무관청 요청사항 총사업비 20% 범위 내 증가, 반영 협약체결(재조사 거치지 않은 사례)

1.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3)-3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안건 유형

□「실시협약 변경(안)을 심의·의결 유형

❖ 대전시 환경에너지종합타운 안건은 시설 가동('18.3월) 이후 자금재조달에 따른 공유이익과 환경규제에 따른 추가시설 설치비를 사용료에 반영하여 실시협약 변경안 안건 상정, 심의 의결

❖ 소사~원시 복선전철 안건은 공사기간 연장(26개월)에 따른 간접비 등의 중재 판정 결과 반영 및 시설 준공 후 사업비 정산에 대한 협약 변경안 안건 상정, 심의 의결

✓ 철도사업에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해결 방법은 민간투자사업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중재, 소송의 방법이 있고, 소송은 대법원 판결 시 판결문 토대 실시 협약변경으로 기간 소요가 길어지고, 중재는 중재합의가 있다면 단심 판단, 조정은 당사자 조정 수용 의지가 있다면 조정안에 대해 협약 반영 가능

1.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3)-4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안건 유형

□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을 심의·의결

➢ **평택시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은 노후화와 처리량 증가로 악취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기존 시설을 확장 이전하여 완전 지하화**하는 것으로, 악취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지상에 생태공원·체육시설을 함께 조성하여 인근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사업시행자로는 '평택엔바이로 주식회사'가 지정될 예정으로, '24년 착공 후 '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

□ 실시협약 변경(안)을 심의·의결

ㅇ 국가폐수공공처리시설(동부권역) 개량 안건은 경산 하수처리물량 조정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운영비 변동을 반영하기 위한 협약 변경

1.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4)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안건 쟁점

◆ 총사업비 쟁점

➢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에서 최초제안자 사업검토의 총사업비로 적격성 조사 통과 후 제3자 제안공고 시점 총사업비 증액 부분에 대한 인정 여부 검토

✓ <u>법령 변경이나 당초 최초 제안 당시 총사업비에서 설계기준의 정부 실행대안으로도 규정상 반영했어야 할 공사비의 경우</u> 제3자 공고시 총사업비 증액해야 하는 차액 금액이 당초 총사업비 20% 범위 내 재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반영 검토

✓ 사안에 따라서는 우협지정 후 재조사를 거쳐 사업추진 결정 및 총사업비 증액 검토

1.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5)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안건 쟁점

-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에서 최초제안자 사업검토의 총사업비로 적격성 조사 통과 후 제3자 제안공고 시점 총사업비 증액 부분이 발생한 경우 실제 당초 검토 때보다 이미 법령이 변경되고, 공고 때 그 금액으로 할 수 없는데 이에 맞춰 사업에 들어오도록 제시하는 것도 현실에 맞지 않고, 최초 제안 금액 대비 설계에서 정부 실행대안 검토로도 해당 금액이 나오는 경우라면 그 금액은 인정해줘야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부분의 주무관청, KDI 등 전문기관, 기재부 판단을 거쳐 민투심 안건 상정으로 해결

- ✓ 사업 통과 목적으로 무조건 적게 써서 통과된 적격성조사 대상 사업이 아니라 이후 법령 변경이나 시설 누락, 필요 설계 반영, 법정 검토 요소 시 증가 총사업비는 이후 제3자 공고에서 증액 부분 있다해도 구체적 타당성을 들여다봐서 제3자 공고안에 경쟁 입찰이 가능하므로 실제 사업이 갈 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 민투심 사례를 사업 추진시 참작할 필요 있음

II. 민간투자사업 추진상 쟁점 해결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

1. 민간투자사업 분쟁조정제도 도입 배경(1)

WTO GPA 개정 등

- **WTO GPA** 개정으로 정부조달협정에 민간투자사업도 포함되도록 개정되었고, 한미 **FTA**에서는 **WTO GPA**가 개정되면 이를 자동반영하도록 협정이 체결되었으므로 개정된 **WTO GPA**는 미국과 우리나라 간에는 민간투자사업에도 적용됨

- 민투법 시행령 신설조항 **(2014.1.1.** 시행**)**

제41조(규제의 재검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민간부문 제안사업의 추진 절차 : 2014년 1월 1일
2. 제34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투융자회사의 자본금 등 : 2014년 1월 1일
3. 제35조의2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 : 2014년 1월 1일

1.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 (2)

민간투자법 제6절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절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 (신설 **2011.8.4.** 법개정)

→ 제44조의 3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 제44조의 4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 제44조의 5 (분쟁조정신청의 통지 등)
→ 제44조의 6 (조정의 거부 및 중지)
→ 제44조의 7 (처리기간), 제44조의 8 (조사 및 의견 청취)
→ 제44조의 9 (조정전 합의)
→ 제44조의 10 (조정의 효력)
→ 제44조의 11 (비용의 분담), 제44조의 12 (서류의 송달)
→ 제44조의 13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1.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 (3)

구성 및 업무처리절차

-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정부위원[기획재정부 정책조정관리관(위원장), 국토부 정책기획관, 환경부 녹색환경정책관], 사업시행자위원(3인), 공익위원(3인)

- **분쟁조정위원회 업무처리 흐름**

  분쟁조정신청서 접수 → 위원회 조정대상 여부 판단 → 위원회의 분쟁사건 조사, 의견청취 → 조정안 작성 및 위원회 상정, 의결 → 당사자에게 조정안 제시 → 조정안 수락시 조정서 작성 및 조정 성립

2. 민간투자사업 분쟁조정서 양식(1)

분쟁조정 양식

□ **사건번호 : 2020-5호**

□ **분쟁건명 : ○ ○ ○ ○ 조성 민간투자사업 분쟁조정**

□ **신 청 인 : ○ ○ ○ 센터(주)**

□ **피신청인 : ○ ○ ○ 지사**

조 정 서(안)

□ **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항(신청 취지)**

1. 부당한 지체상금 부과에 대한 조정신청

2. 전망대 공사 관련 추가비용 미지급에 대한 조정신청

2. 민간투자사업 분쟁조정서 양식(2)

분쟁조정 사례 (3)-2

□ 조 정 안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한 2020.08.24.자 지체상금 부과 사전통지를 철회한다.

2. 신청인은 신청취지 제2항 기재 전망대 공사 관련 추가 비용(건설이자 및 사업수익률 유지비용) 청구를 포기한다.

3.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본 분쟁조정 관련 비용을 각자 부담하고, 향후 신청취지 기재 사항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기로 한다.

3. 민간투자사업 분쟁조정 유의사항

분쟁조정 관련 소제기 건 처리

- **(분쟁안건 예)**

✓ **실시협약 위반사항 2차 시정명령('19.12.9.)**

✓ **행정소송 제기('20.1.21)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2207)**

✓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신청('20.1.23.)**

✓ **<u>소제기를 이유로 분쟁조정 중지('20.2.3.)</u>**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4조의6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소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조정을 중지하고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20조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 후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조정 절차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상대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용산법률 변호사 권경현 khk@jinwoonlaw.com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62다길 4, 3층 대표전화 : 02-739-7607 팩스 : 02-739-7608